

□ 「채용관리 시행세칙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8조(공개경쟁 채용시험 방법) ①~② “생략”</p> <p>③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. 다만,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<u>회장이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<u>병과</u>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공개경쟁 채용시험 방법) ①~② “생략”</p> <p>③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한다. 다만,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<u>인사위원회</u>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<u>모두 실시</u>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00. 00.></p>
<p>제14조(신체검사) ①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<u>회장은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개정 2022. 3. 24.></p> <p>②~⑤ “생략”</p>	<p>제14조(신체검사) ①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<u>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가부를 심의한다.</u> <개정 2022. 3. 24., 2026. 00. 00.></p> <p>②~⑤ “생략”</p>
<p>제16조(시험의 합격 결정) ① 필기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만이 응시 가능하며,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② 제9조에 따른 제한경쟁채용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하는 채용점검단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22. 3. 24., 2022. 8. 25.></p> <p>③ 여성인력, 비수도권 지역인재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공계 전공자, 고졸자, 체육인, 중소기업경력자 등의 채용활성화를 위한 채용계획이 시행될 경우 합격자 결정은 <u>제1항에서 제5항</u>까지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2. 3. 24.></p> <p>④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25. 4. 30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	<p>제16조(시험의 합격 결정) ① <u>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서류전형 면제를 조치하여야 한다.</u> <신설 2026. 00. 00.></p> <p>② 필기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만이 응시 가능하며,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 제9조에 따른 제한경쟁채용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하는 채용점검단에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22. 3. 24., 2022. 8. 25.></p> <p>④ <u>전형(서류·필기·면접 등)별 동점자 발생 시,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를 선정한다.</u> <신설 2026. 00. 00.></p> <p>⑤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25. 4. 30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
현행	개정(안)
<p>⑤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종면접평정요소 중 다음 각 호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실성 2. 적극성 3. 직업윤리관 4. 체육상식 5. 경력 및 경험 <p>⑥ 결원 예상인원의 보충 등을 위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,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.</p> <p>⑦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부적격 판정,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채용분야별 예정인원의 3배수(2년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2배수)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 3. 24.></p> <p>⑧ 제7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6개월(6개월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1개월,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3개월)로 한다. <개정 2022. 3. 24.></p>	<p>⑥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종면접평정요소 중 다음 각 호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 <개정 2026. 00. 00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실성 2. 적극성 3. 직업윤리관 4. 체육상식 5. 경력 및 경험 <p>⑦ 여성인력, 비수도권 지역인재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공계 전공자, 고졸자, 체육인, 중소기업경력자 등의 채용활성화를 위한 채용계획이 시행될 경우 합격자 결정은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2. 3. 24., 2026. 00. 00.></p> <p>⑧ 결원 예상인원의 보충 등을 위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,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.</p> <p>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부적격 판정,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채용분야별 예정인원의 3배수(2년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2배수)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 3. 24.></p> <p>⑩ 제9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6개월(6개월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1개월,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계약직의 경우 3개월)로 한다. <개정 2022. 3. 24., 2026. 00. 00.></p>
<p>제19조(경쟁시험의 공고) 회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(체육회 홈페이지,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)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어도 시험기일 5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3. 24.> <개정 2025. 12. 30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임용예정 직종·직급·응시자격(공인어학 성적이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제5호 준용) 및 선발예정 인원 	<p>제19조(경쟁시험의 공고) 회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(체육회 홈페이지,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)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어도 시험기일 5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3. 24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임용예정 직종·직급·응시자격(공인어학 성적이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준용) 및 선발예정 인원 <개정 2025. 12. 30., 2026. 00. 00.>

현행

[별표 1] <신설 2022. 3. 24.>

전형절차별 최대 합격배수(제6조제11항 관련)

구분	서류전형	필기전형	면접전형	
			1차	2차
서류전형-필기전형-1차 면접전형-2차 면접전형	20배수	5배수	3배수	1배수
"개정 미 실시 항목 생략"				

※ 모집분야별 확정배수는 최대 합격배수 내에서 모집인원, 예상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계획 시 수립함.

개정(안)

[별표 1] <신설 2022. 3. 24., 2026. 00. 00.>

전형절차별 최대 합격배수(제6조제11항 관련)

구분	서류전형	필기전형	면접전형	
			1차	2차
서류전형-필기전형-1차 면접전형-2차 면접전형	30배수	10배수	5배수	1배수
서류전형-1차 면접전형-2차 면접전형	10배수	-	5배수	1배수
"개정 미 실시 항목 생략"				

※ 모집분야별 확정배수는 최대 합격배수 내에서 모집인원, 예상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계획 시 수립함.

※ 필요 시, [인성검사의 실시를 채용계획 시 수립·반영할 수 있음.](#)

현행

[별표 3] <개정 2022. 3. 24., 2022. 12. 13., 2023. 2. 28., 2023. 3. 28., 2025. 4. 30., 2026. 1. 20.>

채용시험 가점대상자 및 가점(제18조제1항 관련)

가점대상	적용대상	가점	서류전형	필기전형												
청년	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 (15~34세) * 단, 개방형직위 채용에는 적용하지 않음	만점의 3% 가점	○													
청년인턴 및 계약직	채용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청년 인턴(수료자), <u>계약직[11개월(330일)이상] 근무경력이 있는 자</u> * 단, 정규직 채용에 한함	만점의 10% 가점	○													
	채용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계약직 <u>[6개월(180일)이상 ~ 11개월(330일)미만] 근무경력이 있는 자</u> * 단, 정규직 채용에 한함	만점의 5% 가점	○													
영어회화성적 우수자	OPIC 또는 TOEIC Speaking 성적 우수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가점</th> <th>OPic</th> <th>TOEIC Speaking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만점의 5%</td> <td>AL</td> <td>160~200 (AL~AH)</td> </tr> <tr> <td>만점의 4%</td> <td>IH</td> <td>140~150 (IH)</td> </tr> <tr> <td>만점의 3%</td> <td>IM3</td> <td>130 (IM3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단, 정규직 채용에 한함	가점	OPic	TOEIC Speaking	만점의 5%	AL	160~200 (AL~AH)	만점의 4%	IH	140~150 (IH)	만점의 3%	IM3	130 (IM3)	만점의 3~5% 가점	○	
가점	OPic	TOEIC Speaking														
만점의 5%	AL	160~200 (AL~AH)														
만점의 4%	IH	140~150 (IH)														
만점의 3%	IM3	130 (IM3)														
자립준비청년	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② 임용 예정일 기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의 '청년'이어야 하며, <u>군필자의 경우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라 응시 연령상한 연장</u>	만점의 3~5% 가점	○													
"개정 미 실시 항목 생략"																

개정(안)

[별표 3] <개정 2022. 3. 24., 2022. 12. 13., 2023. 2. 28., 2023. 3. 28., 2025. 4. 30., 2026. 1. 20., [2026. 00. 00.](#)>

채용시험 가점대상자 및 가점(제18조제1항 관련)

가점대상	적용대상	가점	서류전형	필기전형												
청년	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청년(15~34세) * 단, 개방형직위 채용에는 적용하지 않음	만점의 <u>1%</u> 가점	○													
<u>대한체육회 청년인턴 및 계약직·공무직</u>	채용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청년인턴(수료자), <u>계약직 또는 공무직으로 330일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</u> * 단, 정규직 채용에 <u>한하며, 휴직기간은 근무경력 산정일수에서 제외</u>	만점의 10% 가점	○													
	채용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계약직 또는 공무직으로 <u>180일 이상 ~ 330일 미만 근무경력이 있는 자</u> * 단, 정규직 채용에 <u>한하며, 휴직기간은 근무경력 산정일수에서 제외</u>	만점의 5% 가점	○													
영어회화성적 우수자	OPIC 또는 TOEIC Speaking 성적 우수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점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Pic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TOEIC Speaking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만점의 3%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M~AH (180~200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만점의 2%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L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L (160~170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만점의 1%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H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H (140~150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단, 정규직 채용에 한함	가점	OPic	TOEIC Speaking	<u>만점의 3%</u>	-	AM~AH (180~200)	<u>만점의 2%</u>	AL	AL (160~170)	<u>만점의 1%</u>	IH	IH (140~150)	만점의 <u>1~3%</u> 가점	○	
가점	OPic	TOEIC Speaking														
<u>만점의 3%</u>	-	AM~AH (180~200)														
<u>만점의 2%</u>	AL	AL (160~170)														
<u>만점의 1%</u>	IH	IH (140~150)														
자립준비청년	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② 임용 예정일 기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의 '청년'이어야 함.	만점의 3% 가점	○													
“개정 미실시 항목 생략”																